

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2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12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2. 10

(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(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문화관광과장 구복규

나. 개정사유

- 11월1일 군민의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주변의 행사와 겹치지 않고 군민 모두가 즐기고 경축하는 날로 개정하여 폭넓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민의 날은 “4월 셋째주 금요일”로 한다로 (안 제2조)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날을 “4월 셋째주 금요일”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이 시기의 날씨, 도민체전 및 축제 등의 일정을 고려해 볼 때, 별 무리없는 택일이라고 검토됨.
-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, 공고 등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사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"원안의 결"

첨 부 :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1월 1일”을 “4월 셋째주 금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군민의 날) 화순군민의 날은 <u>11월 1일</u> 로 한다.	제2조(군민의 날) - - - - - 4월 <u>셋째주 금요일</u> - - - - -